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45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 김수흥 · 김성주 · 김경만

한병도 • 윤준병 • 양정숙

김교흥 · 김윤덕 · 유동수

윤재갑 · 안규백 · 이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업·임업·어업 이외 주요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 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0억원"을 각각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상속 기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2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	
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u>30억원</u>
에는 <u>20억원</u> 을 한도로 한다)	<u>30억원</u>
③ ~ ⑪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